

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07.10.5>
산업단지개발사업위탁료율기준(제10조제1항관련)

공사비(원)	요율	비고
100억 이하	9.0% 이내	1. 공사비라 함은 재료비·노무비·경비·일반관리비·이윤·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. 2. 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·시공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100억 초과 300억 이하	8.0% 이내	3.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, 4.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총공사비에 대한 수수료의 범위안에서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.
300억 초과 500억 이하	7.5% 이내	5.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가산한다.
500억 초과	7.0% 이내	6. 조사·설계 등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이 기준에 의한 공사비로 본다.